

1. 운 용 총 칙

회계년도 : 2010년
 예산차수 : 본예산
 회계구분 : 노인복지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수군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
- (2) 설치목적 : 장수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
- (3) 설치년도 : 1999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장수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.
- (2)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: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 및 수행사업 지원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 (단위 : 천원)

2009년도 말 현재액 ㉠	2010년도 조성계획			2010년도 말 현재액 ㉡ = ㉢ + ㉠	비 고
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 = ㉢ - ㉣		
291,109	10,830	8,000	2,830	293,939	

- (2) 재원조성 :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
- (3) 지원기준 :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, 기타 노인복지 관련 사업
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, 읍면분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, 노인건강, 취미활동, 노인교육,
- (4) 지원대상 :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